

##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월 18일

3. 제안 이유

순환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중 조수보호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므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을 위함

4. 주요 골자

- 수렵장 사용료의 적립금조항 신설
  - 운영기금 조성
  -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

## 5. 검토 의견

- 순환수렵장사용료를 조수보호관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  
-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